

##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30호)

○ '96. 2. 6.

○ 총무재무위원회  
위 원 장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'95. 11. 24 서초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'95. 11. 25
- 다. 상 정 일 자 : '96. 2. 6
- 라. 위원회 개최 : 제49회 임시회(회기중)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회의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국장 이 상 하 )

#### 가. 제안이유

-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처 예규 제10호와 부합되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, 당해 위반행위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1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9조)
- 별지 제2호의 1서식 (갑, 을, 병, 정, 무)을 신설함.

#### 다. 참고사항

- 1) 관련법규 : 폐기물관리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환경처 예규 제101호 서울특별시 및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
- 2)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3) 합 의 : 의견없음

#### 라. 개정조례(안) : 별첨 (생략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임충빈)

가. 검토내용

-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에 근거를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임.

나. 검토결과

- 위반 사항을 시정조치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위반즉시 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위반현장에서 발부함은 바람직하며 조례 제29조에 단서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

다. 관련법규 (생략)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종래와 같이 시행하는 것과 위반현장에서 고지하는 것과 차이는 →위반현장에서 즉시 발부하여 효과를 높인다고 인정될때만 발급하고 종래와 같이 조사후 고지하는 제도도 병행하는 것임.
- 고지할수 있는 공무원은 누구인가 →동직원과 청소과 직원임.
- 현장 발견치 못할때의 시정조치는 →무단투기의 내용물에서 편지봉투등을 근거로 추적하여 단속하고 있음.
- 위반쓰레기 방치로 골목등에 쌓이는 곳이 많은데 →공공용 봉투를 공급, 수거증이며 애로가 많음.
- 조례가 늦게 제출된 이유 →준칙 시달이 작년 11월 시달되어 늦은감이 있음.
- 현장고지서 발부시 수기상 착오등은 → 용지수불을 철저히 할것이며 일련번호 부여등 철저히 관리할 예정임.

- 무단 투기시 공공용 봉투자급의 범위는 → 아파트단지와 주택지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아파트 단지내는 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해야 함.
- 폐기물수거료는 선납제이며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이나 불편사항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보며 이런 의미에서 새로이 주민의 제재 조항을 만드는 이유는 → 단서 조항의 규격봉투사용자는 해당이 없으며 무단투기자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하여 종량제 정착과 깨끗한 환경 보전등 질서확립에 바람직한 제도라고 봄.
- 과태료 세입이 많은 것만 보아도 과잉단속 내지 공무원의 횡포가 많다고 보는데 → 비양심적이고 범법자에게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법칙이 강화되면 준수하는 효과도 있다고 봄.
- 무단투기를 모를때 등에서 조치하여 주는가 → 공공용 봉투를 공급, 수거 처리하고 있음.
- 공공용 봉투의 공급량은 → 정확한 량은 기억이 없으나 수시로 공급 보충하고 있음.
- 고지할수 있는 범위, 부작용이 염려되고, 적발하기 쉽지 않는데 → 단속 공무원의 철저한 교육으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단속실효성을 확보 하겠음.
- 교통위반사항 신고와 같이 시민신고 포상제를 도입할 용의는 → 적극 검토 하겠음.
- 현장 적발고지에는 좋은 제도라고 보나 서식제2호의1 갑 하단 내용은 삭제 하여도 되지 않는가 → 삭제하여도 문제가 없음.
- 수기 고지서를 장차 OCR카드로 할 용의는 → 적극 검토 하겠음.
- 본제도의 활용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→ 직원교육등을 통해 실효를 거둘수 있게 추진 하겠음.

- 청문제도를 제대로 하여 주민권리를 보호해야 → 현장고지서에도 청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므로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권리구제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더 편리하고 효과적임.
- 조례제4조에서 일반폐기물 관리지역을 법제12조에 의해 지정 또는 해제시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사후보고 보다 사전 승인으로 바꿀 용의는 → 구 전역이 관리구역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-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후보고나, 사전동의나의 성격상 차이가 많은데 전구가 관리구역이며 서울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해당이 없음.
- 별지제2호의1 서식의 "을, 무" 를 삭제하고 "병, 정, 무"의 성명 다음 주소란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→ 지적이 타당하며 수정하여도 됨.
- 의안제출서에 예산조치 및 합의에서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→ → 예산은 인쇄비만 소요되고 적은 액수이며 관련부서와 합의 대상이 없음.
- 이의신청, 청문기관, 납부기간이 상이한데 합리적인가 → 절차적인 것이므로 관계가 없음.  
※ 비송사건절차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음.

### 5. 토론자 및 토론판

반대 : 시민국장께서 미국에서는 법이 엄격해서 질서가 준수되고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법의 집행자가 엄정하여야 된다고 보므로 집행자가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의지에 달려 있는데 만에 하나 범법자와 합의가 시도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납부통지서 보다 확인서를 징취하여도 효과가 있다고 보아 반대토론 함.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

원안가결 (재석 12명중 반대2, 찬성7, 기권3)

8. 소수의견의 요지

현장고지서는 남발되거나 주민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용상 신중을  
기해야 하며 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가. 예산조치

나. 연설회의, 공청회등

10. 체계자구 정리내용

가. 별지 제2호의 1서식(갑)난의 하단 2줄 삭제

○ 표의 뒷면 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

○ 서식 갑, 을 및 병, 정, 무를 각각 복사용 먹지 부착 인쇄.

나. 별지 제2호의 1서식(병)(정)(무)의 납부의무자 성명 다음난의 "주소"  
는 "주민등록번호"로 자구정정